

시민의 안전 최상의 복지!

# 2022 인천 시민안전보험



## ☑ 보험 개요

-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가입절차 불필요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자동 가입)
- ▶ **보장기간** : 2022. 1. 1. ~ 2022. 12. 31. (매년갱신 예정)
- ▶ **보 험 료** : 인천시가 일괄 납부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보 험 금** : 아래 담보항목에 해당될 경우 보험금 지급

담 보 명	보 장 내 용	공제가입(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인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사망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상해후유장해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인천시민 (만12세 이하 / 공제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등급)	1,500만원 한도
개골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개골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원

## ☑ 보험금 청구 : 서식 다운받아 팩스 또는 등기로 신청 ※ 보험청구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상법 제662조)

- ▶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02-6900-2200 / FAX : 0505-136-0128
- ▶ 서식 다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 www.incheon.go.kr ⇨ 검색창에 '시민안전보험' 입력 ⇨ 2022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 붙임 파일 다운

# 시민의 안전 최상의 복지!

## 2022 인천시민 안전보험

### ☑ 보험 개요

- ▶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이면 보험에 자동 가입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 보험가입 내용

-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 보장기간 : 2022. 1. 1. ~ 2022. 12. 31. (매년갱신 예정)
- ▶ 보험료 : 인천시가 일괄 납부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아래 참고)



### ☑ 보장내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담보명	보장내용	공제가입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인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상해사망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상해후유장해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인천시민 (만12세 이하 / 공제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등급)	1,500만원 한도
개들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개들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원

### ☑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상법 제662조)

- ▶ 문의처 : 120미추홀콜센터 (032) 120 연결 후 3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 1577-5939, 02-6900-2200 / FAX : 0505-136-0128
- ▶ 청구서식 다운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incheon.go.kr ⇒ 검색창에 '시민안전보험' 입력 ⇒ 2022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 붙임 파일 다운

### ☑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 ▶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인 경우 보험에 자동가입이 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음
-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 보험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면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 지급

### ☑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 개인보험과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  
※ 단, 보험업법 제9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항에 중복지급 불가한 보험상품이 있음

### ☑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

-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

### ☑ 인천시민이 서울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보장 가능  
※ 해외에서의 사고는 항목별 상이하어 보험사로 문의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란?

-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란?

-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대중교통수단이란?

- ▶ 여객수송용 선박 및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란?

- ▶ 운행 중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 전세버스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전세버스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 강도에 대한 정의

-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규정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 ▶ 그 직접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지급

###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이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  
※ 단, 동법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 개 물림사고로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지급  
※ (응급실 정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응급의료시설

